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1
----------	-----

발의년월일 : 2019년 3월 29일  
발 의 자 : 이영실, 홍성룡, 박순규,  
추승우, 이정인, 김인호,  
김화숙, 이병도, 김혜련,  
김호평, 박기재, 문장길,  
오현정, 이광성, 김정환,  
권영희, 김소양, 김용연,  
김동식, 서윤기, 봉양순  
의원 (21명)

## 1. 제안이유

- 간접흡연은 흡연과 마찬가지로 암, 호흡기질환을 일으키고 특히 영유아와 아동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국가에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간접흡연의 피해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흡연예방 및 흡연자의 금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에서 먼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간접흡연으로부터 영유아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이유로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변경하고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제안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안 제명을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변경함
- 나.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목적을 변경함(안 제1조)
- 다. 금연환경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 라.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안을 변경함(안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
- 마.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자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제5조제5항)
- 바. 시장이 금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제9조제3항)
- 사. 금연지도원의 야간, 새벽, 휴일 등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6항, 제9조의2제7항)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를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모든 시민을”을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로,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로 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연환경”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인지적인 환경을 의미한다.

제4조제1항 중 “간접흡연”을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흡연행위가”를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흡연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연에 관한”을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

구역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이 제1항제4호부터 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을“(금연환경의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으로, “설치·운영하거나”를 “설치·운영하거나 금연환경조성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으로 한다.

제9조의2제6항 본문 중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활동수당”을 “활동수당”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규칙으로”를 “시장이 별도로”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2. (생략)</p> <p><u>&lt;신설&gt;</u></p> <p>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u>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모든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u></p> <p>② 시장은 <u>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u></p>	<p><u>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u></p> <p>제1조(목적) ----- <u>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u> -----.</p> <p>제2조(정의)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금연환경”이란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인지적인 환경을 의미한다.</u></p> <p>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 <u>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u></p> <p>② ----- <u>금연환경조성을 위해 흡연이</u> -----</p>

다.

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1. 2. (생략)
- 3. 학교정화구역(「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신설>

- 4. (생략)
- 5. (생략)
- 6. (생략)
- 7. 8. (생략)

----

③ -----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 3. 교육환경보호구역(「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중 절대보호구역을 말한다)

4.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 경계면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7. (현행 제5호와 같음)
- 6. (현행과 같음)
- 8. 9. (현행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② ~ ④ (생략)

<신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생략)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9조의2(금연지도원) ① ~ ⑤ (생략)

⑥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이 제1항제4호부터 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과 협의 할 수 있다.

제9조(금연환경의 조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 설치·운영하거나 금연환경조성 등 -----  
-----  
-----.

③ 시장은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  
-----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의2(금연지도원)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활동수당 -----  
-----  
-----.

<단서 삭제>

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  
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⑦ 제5항에 따른 승인서와 금연지  
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⑦ -----  
----- 시장이  
별도로--.